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 사항

백영화 연구위원

- 최근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단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최근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됨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방식만을 전제하고 있음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opt-out)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미치게 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음
 - 그러나 대형 분쟁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이 자신의 제외신청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개별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특히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패소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재판청구권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최근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 등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였음
 - 소송의 단계를 2단계로 진행하여, 1단계 절차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기업의 금전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고, 2단계에서는 금전지급의무 확인판결을 전제로 개별 소비자들의 채권을 확정함
 -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패소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신청(opt-in)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한 것임
- 일본식 집단소송제도가 정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각국별로 다양한 운영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상황, 모델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1. 검토배경



■ 최근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음

-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된 소송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음¹⁾
-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집단소송제도를 증권 이외의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도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됨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자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자는 내용, 원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폭넓게 인정하자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별첨〉 표 참고)
 -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안 중에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있음(이종걸 의원안, 박용진 의원안, 박선숙 의원안)

■ 집단소송제도는 다양한 방식과 모델로 운영될 수 있는데, 현재 발의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들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제도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집단적 소송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각국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
- 우리나라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후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도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을 전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미국식 방식만 전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²⁾ 본고에서 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함

1) 2004. 1. 2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2005. 1. 1부터 시행). 기업의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대표가 피해자 전체의 청구 총액을 일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임

2) 신석훈(2017. 1. 25),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김희동(2014. 1), 「집단적 권리구제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2단계형 제도설계의 가능성」; 서희석(2014. 9),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등

2. 집단소송제도의 의의 및 기능



■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각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집단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³⁾

-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통된 원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은 각자 자신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행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전체 피해의 규모는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별 손해액은 소액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 개별 피해자가 소액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임
- 이러한 경우 1:1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방식의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임
 - － 다수의 피해자들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 집단소송 방식이 허용되면 예전에는 피해를 입고도 소송 제기가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배상액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불법행위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 다수의 분쟁을 공통으로 해결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소송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3) 넓은 의미의 집단적 분쟁 해결 수단에는 공동소송제도(민사소송법 제65조), 선정당사자제도(민사소송법 제53조), 집단분쟁조정제도(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단체소송제도(소비자기본법 제70조) 등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함

3. 집단소송제도의 운영 모델 및 해외 사례



가. 집단소송제도의 운영 모델

■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서 집단적 소송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크게 이견이 있지 않으나, 그 구체적인 제도 모델에 있어서는 각국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함⁴⁾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대표당사자형 방식과 제3자 소송담당형 방식이 있음
 - 대표당사자형 방식은, 피해자들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원고로서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것임(미국, 호주, 캐나다)
 - 제3자 소송담당형 방식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원고로서 소송 절차를 수행함(브라질, 일본, 프랑스)
 -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된 방식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피해자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일정한 단체·기관이 원고가 될 수도 있음(스웨덴, 덴마크)
- 피해자의 소송 관여 또는 판결의 효력 범위 형태에 따라, 제외신청형(opt-out형) 방식과 가입신청형(opt-in형) 방식이 있음
 - 제외신청형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이 잠재적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침(미국, 호주, 캐나다)
 - 가입신청형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가입신청을 한 피해자들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브라질, 일본, 프랑스, 스웨덴)
 - 제외신청형과 가입신청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음(덴마크)⁵⁾
- 소송의 단계에 따라 1단계형 방식과 2단계형 방식이 있음
 - 단일한 소송절차로 이루어지는 1단계형 방식이 있음(미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 2단계형 방식에서는, 책임 원인의 확정 절차와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구분하여 2단계로 소송이 이루어짐(캐나다, 브라질, 일본, 프랑스)

⁴⁾ 국가별 제도 모델에 대해서는, 서희석(2017. 8),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토론회 및 한국소비자원(2016. 12), 「소비자 권리구제 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참고함

⁵⁾ 덴마크의 경우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집단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한 가입신청형을 기본으로 하되, 각 개인별 청구금액이 적어서 개별소송의 제기나 집단소송 가입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옴부즈만이 대표자가 되는 때에 한해서 제외신청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함

■ 가장 대표적인 집단소송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대표당사자형/제외신청형/1단계형’ 방식이며, 비교적 최근에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식(프랑스식) 집단소송제도는 ‘제3자 소송 담당형/가입신청형/2단계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은 가장 전통적 · 대표적인 방식이고, 비교적 최근에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 프랑스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였음
- 아래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일본식 집단소송제도⁶⁾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

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소송 편익을 돕고 집단적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임

-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일정 요건⁷⁾을 갖추어 법원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개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대표당사자로서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가짐
- 가해자의 책임 원인의 확정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단일한 소송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판결이나 화해의 효력이 실제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 피해자들에게도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치게 됨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파급력도 크다는 장점이 있음

-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적극적 ·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 추정되는 집단(class) 전체에 소송의 결과가 자동으로 미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철저히 할 수 있음
- 잠재적 피해자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거대하여 위법행위 억제 효과도 커질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소송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⁶⁾ 프랑스의 집단소송제도는 일본의 방식과 큰 틀에서 유사하므로, 본고에서는 프랑스형 모델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고 일본형 모델에 대해서만 소개하기로 함

⁷⁾ 집단의 다수성(numerosity), 쟁점의 공통성(commonality), 공격 · 방어방법의 전형성(typicality),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 김희동(2014, 1), 「집단적 권리구제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 2단계형 제도설계의 가능성」,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p. 230

■ 한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소송수행결정권 침해 소지, 소송 남용의 우려 등이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함⁸⁾

- 개별 피해자들의 명확한 의사와 상관 없이 판결의 효력이 잠재적 피해자 집단 전체에 자동으로 미치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물론 명시적으로 제외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해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음
 - 특히 확정판결의 효력은 대표당사자가 승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단 전체에 미치게 되는데, 그 경우 피해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임
- 집단소송은 전체 피해 금액이 높아서 변호사가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의 가능성이 있고,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비판도 있음
 - 제외신청형 집단소송은 그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기업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재판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적 진실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화해를 통해 빨리 소송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으로 인한 실질적 수혜자는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도 제기됨

다. 일본식 집단소송제도

■ 일본에서 2013년에 소비자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⁹⁾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일본의 집단소송제도에서는 분쟁해결의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1단계 공통의무확인소송 및 2단계 대상채권의 간이확정절차), 판결의 효력은 가입신청을 한 피해자에게만 미치도록 함¹⁰⁾

- 일본의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계약(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다

⁸⁾ 신석훈(2017. 1. 25),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쟁점과 과제 - 유럽연합(EU) 집단소송제 도입논의와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pp. 6~8

⁹⁾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2013. 12. 11 제정 및 2016. 10. 1 시행

¹⁰⁾ 법원행정처 연구용역 보고서(2017. 7), 「일본의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 pp. 127~133

수의 소비자에게 공통 원인에 기초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함
 - 특정적격소비자단체는 개별 소비자들의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임
- 1단계 절차에서는 개별 소비자들에게 공통되는 쟁점(사업자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확인판결을 내리고, 그 확인판결을 전제로 하는 2단계 절차에서 개별 소비자의 개별 권리(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대하여 심리·확정함
 - 1단계 절차에서 원고 소비자단체가 패소한 경우에는 2단계로 진행하지 않으며, 이 경우 1단계 판결의 효력은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¹¹⁾
 - 1단계 절차에서 원고 소비자단체가 승소한 경우에는 2단계 절차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개별 소비자들은 원고 소비자단체에 채권신고를 하여 소송에 가입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1단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됨
 - 2단계에서는 심리절차를 단순화하여 간이·신속한 형태로 개별 채권을 확정함

■ **일본식 집단소송제도는 2단계형 소송 절차 및 변형된 가입신청형 방식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일본식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비자들이 1단계 절차의 결과를 보고 2단계 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단체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고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가입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되었음
- 즉, 소비자들은 1단계 절차의 결과가 유리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이른바 ‘기판력의 편면적 확장’)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판결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와 차이가 있음
- 또한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음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들이 제외신청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경우 그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일본에서는 가입신청형 방식을 채택함

¹¹⁾ 한편 1단계 판결의 효력은 원고 이외의 특정적격소비자단체에게는 미치므로, 다른 소비자단체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

■ 다만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음

- 기본적으로 가입신청형 방식하에서는 개별 소비자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외신청형 방식에 비하여 집단소송으로서의 실효성이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임

4.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논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은 모두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는데, 집단소송의 구체적인 제도 모델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 만큼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법률안에서는 일률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하고 있음
-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개별 피해자들의 자발적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목적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강력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는 있을 것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에 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도 있겠음
- 그러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는 개별 피해자들의 소송수행결정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분쟁이 대형화되는 경우 개별 피해자들에게 소송 제기 내용 등을 개별 고지하기 어렵고 그 경우 개별 피해자들이 자신의 제외신청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대표당사자가 패소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피해자인지,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여 제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런 경우에게까지 패소판결의 효력을 받아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최근에 집단소송제도를 정비한 일본 등에서는 미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였음
 - 1단계 절차에서 소비자단체가 원고가 되어 사업자의 금전지급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하고, 원고가 1단계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지 않고, 1단계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개별 소비자들이 가입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설계한 것임

- 물론, 일본식 집단소송제도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일본식 집단소송제도는 개별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 방식에 비하여 집단소송으로서의 실효성이나 파급력이 떨어질 수 있음
 - 또한 소송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의 능력 등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음
- 그러나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집단소송제도에는 다양한 제도 모델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다양한 입법례와 활용 상황, 모델별 장단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선행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임 **kiri**

〈별첨〉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관련 계류 법안¹²⁾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집단소송 대상
집단소송 관련 단행법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1183	집단소송법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 자보호법 관련	200665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464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 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2895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 법 관련	2008306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법안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한정)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12)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있으나 이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음

			따른 손해배상청구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행위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7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200506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의약외품, 식품 관련	200918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의약외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0919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